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50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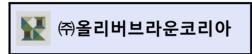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 02. 13.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 10. 10.

올리버브라운 카페 정보공개서

(주)올리버브라운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 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36, 2층(운서동, 비엠더블유드라이빙센터)

○ 대 표 전 화 : 02-330-4298 ○ 팩 스 : 02-330-4297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2-330-429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X. 기타 첨부서류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 ftc.q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u>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u> <u>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u>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 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상 호	사용 .	사용 브랜드				주 소			
	올리버브라운 카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36, 2층(운서동, 비엠더블유드라이빙센터)					
㈜올리버브라운	법인설립등기일	٨	^{나업자등록일}	대표	Ŧ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코리아 	2014. 11. 05.	20	014. 11. 05.	박 주 한		02-330-4298		02-330-4297	
	법인등록번호		110111-55	56480 사업		다등록번호		110-86-1517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 계	이름/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비조성	올리버브라운		중구 공항동로 136, 2 비엠더블유드라이빙센터	·		
대 표 자 	박 주 한	카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 주 한	02-330-4298	02-330-429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올리버브라운 카페"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올리버브라운 카페	"올리버브라운 카페"는 호주 최고의 커피 로스터들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신선한 커피와 벨기에 초콜릿을 직저 녹여 만든 시그니처 메뉴를 포함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상 호	올리버브라운 카페 000점	가맹점명은 개점 전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p3 참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고
2021년	302,156	756,259	-454,104	392,483	-41,204	-34,216	별첨 1.에
2022년	316,151	904,560	-588,408	883,627	-6,860	-134,304	재무상황
2023년	370,981	886,776	-515,795	845,198	77,315	72,613	근거자료 첨부

2)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년, 월, 일)

관련 여부	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 경력	담당 업무
선인 연구	시 급	E 411	기 간	BO BT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 주 한	대표자	2020. 01. 01. ~ 현재 (주)올리버브라운코리아 대표		총괄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단위 : 년. 월. 일/명)

시 점	임윤	직원 수	
시점	상근	비상근	역면 ㅜ
2023. 12. 31. 기준	1	-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는 2014년 10월 30일 "OliverBrown."의 상표 등록권리자인 송병선으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귀하에게 가맹계약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상표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위 : 년, 월, 일)

이미지	OliverBrown.						
명 칭	OliverBrown.	권리내용	상표(43류)				
등록일	2013. 09. 23.	등록번호	4102690170000				
등록권리자	송 병 선	등록만료일	2033. 09. 23.				
비고	위의 상표 내용은 한국특허?	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확인할 수 있음.	[http://www.kipris.or.kr/]에서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0년 04월 01일

2. "올리버브라운 카페"의 연혁

(단위 : 년. 월. 일)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2014. 11. 05.~2015. 04. 05.	6층씨구역(충정로2가,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2015. 04. 05.~2016. 0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7길
			2015. 04. 05.~2016. 01. 24.	76, 2층, 3층, 4층(서교동)
		운 박 주 한	2016. 01. 25.~2019. 01. 01.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여의나루로
㈜올리버브라운	올리버브라운		2016. 01. 25.~2019. 01. 01.	71, 1층 101호(여의도동)
코리아	카페	ㅋㅜ인	2019. 01. 02.~2020. 07. 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7길
			2019. 01. 02.~2020. 07. 05.	76, 2층, 3층, 4층(서교동)
			2020 07 06 22 04 07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여의나루로
			2020. 07. 06.~22. 04. 07.	71, 1층 101호(여의도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36,
			2022. 04. 08.~현재	2층(운서동, 비엠더블유
				드라이빙센터)

3. "올리버브라운 카페"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정립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올리버브라운 카페	커피	커피, 초콜릿, 차, 음료, 디저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년. 월. 일/개)

지 역	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5	4	1	7	6	1	6	5	1
서 울	2	2	-	2	2	-	2	2	-
부 산	-	-	-	-	-	-	-	-	-
대 구	-	-	-	1	1	-	1	1	-
인 천	2	1	1	3	2	1	2	1	1
세 종	-	-	-	-	-	-	-	-	-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	-	-	-	-	-	-	-	-
경 기	-	-	-	-	-	-	-	-	-
강 원	-	-	-	-	-	-	-	-	-
충 북	-	_	-	-	-	-	_	-	ı
충 남	1	1	-	1	1	-	1	1	-
전 북	-	-	-	-	-	-	-	-	-
전 남	-	_	-	-	-	-	-	-	ı
경 북	-	-	-	-	-	-	-	-	-
경 남	-	-	-	-	-	-	-	-	-
제 주	-	-	-	-	ı	-	-	-	-

5. 바로 전 3년간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 도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년	3	1	-	-	-	4
2022년	4	2	-	-	-	6
2023년	6	-	-	1	-	5

6. "올리버브라운 카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개/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소수점 이하 반올림, VAT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지 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군 매출액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m²당	02	3.3m²당	. –	3.3m²당	
전 체	5	187,467	4,767	474,742	7,680	2,315	110	
서 울	2		해당 없음				5곳 미만	
부 산	-							
대 구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인 천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세 종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위 <u>매출액은 가맹점의 POS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u>된 것으로써 <u>휴업한 1개 가맹점과 계약이 해지된 1개 가맹점</u>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귀하는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 및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 상황, 투자규모,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맹사업법』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 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단위: 개, 일)

연 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4	1,161	
비고	휴업한 1개 가맹점 제외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본부(지사 또는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기관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 번호
우리은행	영업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6(등교동)	02-332-6331

2)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체결일]에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올리버브라운코리아]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당사에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①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②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③ 귀하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위 ① ~ ③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당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 및 공사공급계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비	11,000	게이+비가이	
신규교육비	2,200	계약체결일	
총 계	13,200		
반환 조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귀하는 당사에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지역권부여, 가맹점운영권 부여, 교육수료, 기간만료 등의 경우		
비고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 및 매니저 교육	· 우기준, 직원 1명당 550 추가됨.	

2) 보증금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이며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제외)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일	정기지급금 미지급, 상품대금 미지급 등
비고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비고
가맹비	11,000	
신규교육비	2,200	
이행보증금	5,000	VAT 제외
총 계	18,200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총 금액 <u>123,200천원</u>(VAT 포함)(추가비용, 설계도면비, 검수비용 및 공사 감독비용 제외)으로써 당사에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99.17㎡ (구 30평), VAT 포함)

(1) 인테리어비용, 장비・집기비용 및 초도상품 대금

구 분	인테리어비용	장비・집기비용	초도상품 대금
지급대상	귀하가 선정한 자 또는 아바디자인, 디브릿지, 제이디상사 등		귀하가 선정한 자 또는 당사 식스티스레트로커피컴퍼니, 우진이엔티 등
금 액	66,000	44,000	13,200
면적 3.3m²당 금액	2,196	1,464	439
지급기한	분납제도 침	계약 체결 시 협의	
반환조건	공사 전 계약의 취소		공사 전 계약의 취소
비고	○ 기준금액은 인건비, 원자재 수급, 물가변동, 매장의 크기, 설치비 등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외부창호 및 테라스 등의 공사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일정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 지역특성에 따른 간판소재의 허가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협의.		

(2) 설계도면비, 검수비용 및 공사감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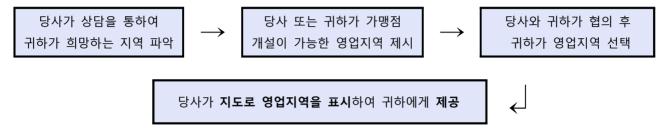
구 분	설계도면비	검수비용	공사감독비용
지급대상		당사	
금 액	3,300	3,300	수도권 지역 1일당 110 그 외 지역 1일당 165
면적 3.3m²당 금액	-	-	-
지급기한	인테리어 등의 공	공사완공 후 2일 이내	
반환조건	공사 전 계약의 취소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 기준금액은 매장의 규모 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설계도면 및 검수비용은 귀하가 인테리어 등의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숙식 및 교통비 등은 실비 정산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영업지역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신중하게 영업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같습니다.

구 분	교육을 받기 위한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
종업원	국일인 기군 畝급 	만 18세 이상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분납제도

당사는 귀하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분납제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착수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총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총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총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시기	공사 착공일 지급	공사 진행률 50%기준으로 익일까지 지급	공사 완공일 지급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1) 정기지급금, 교육비

구 분	정기지급금	교육비	지연이자
지급대상	당사		
금 액	총 매출액의 3.3%	1명당 550	년 20%
지급기한	매 익월 10일	교육비를 통지받은 후 지급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반환조건	-	교육 미이수의 경우	-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금액	교육 이수의 경우	-

(2) 광고•판촉 분담금 및 상품비용

구 분	광고・판촉 분담금	상품비용
지급대상	당사	당사, 식스티스레트로커피컴퍼니, 삼성웰스토리, 우진이엔티 등
금 액	p25~26 참조	발주한 상품에 따라 금액 지급
지급기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해당 월말을 마감하여 매 익월 10이내 지급
반환조건	광고•판촉행사를 미실시한 경우	상품의 하자발생 시
반환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충・방서비용, 보안SYSTEM비용 및 CCTV비용

구 분	방충・방서비용	보안SYSTEM비용	CCTV비용	
지급대상	귀하가 선정한 자			
금 액				
지급기한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다름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화재보험, 영업표지 변경비용 및 점포환경개선비용

구 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화재보험	영업표지 변경비용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대상	귀하가 선정한 보험회사		귀하가 직접 선정, 당	당사 또는 아바디자인
금 액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다름		p29-30 참조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귀하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가맹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위반 시 책임
표준레시피 준수	표준레시피를 준수여부 점검		
위생점검	위생상태 점검		
고객서비스 점검	고객 서비스상태 점검		상품공급중단
품질기준,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점검	품질기준 준수여부 점검, 상품 관리상태 점검 및 실재 재고수량 조사 등	년 2회	/계약해지 등
매출관리	매출 누락에 대한 조사 실시		
각종 설비 및 장비점검 등	각종 설비 및 장비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하여 당사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 н	재가맹비	지급기한	비고
구 분	3,300	계약이 갱신되는 날부터 14일 전에 지급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사업 양도에 대한 통지 및 그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를 포함한 모든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양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귀하가 정해진 기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양도를 승인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과 새로운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당사의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④ 양도를 거절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 등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표지를 마련하여 통지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를 포함한 모든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지 기간 내에 새로운 영업표지로 변경(p30 참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으로 당사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사실 통지하고 ② 당사와 귀하를 포함한 모든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 간에 협의 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인 부담부분

귀하가 운영하는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나) 양수인 부담부분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가맹계약 자여기간을 승계하거나 당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당사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가맹계약 잔여기간 승계	비고
이행보증금	5,000	VAT 제외
교육・훈련비	2,200	교육・훈련 이수
총 계	7,200	

구 분	신규 가맹계약 체결	비고
가맹비	11,000	
이행보증금	5,000	VAT 제외
교육・훈련비	2,200	교육・훈련 이수
총 계	18,2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철거하여야 하고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운영매뉴얼 등 모든 서류를 즉시 반환하야 합니다.

또한 게재 중인 광고 등도 철거·회수·삭제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상품(상품, 설비 등)을 당사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념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가 당사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

귀하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합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맷본부에 정보공개서 워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판매상품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커피, 초콜릿, 차, 음료, 디저트 등	① 판매하도록 지정된 상품 또는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함. ② 판매하도록 지정된 상품 또는 제품을 변경·추가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표준레시피를 준수하여야 함. 등	시정조치/계약해지 등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외에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올리버브라운 카페"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판매상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년, 월)

상품명	권장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고
초콜릿	5.80 ~ 6.80		
커피, 차 및 음료	2.50 ~ 6.80	팩스, 이메일, 서면통지 등	2023. 12. 기준
디저트	6.90 ~ 14.50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권장가격은 귀하가 당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이하 계열회사 포함)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ᄌ 멘기 키피 ㅊ큐리오 저ㅁㅇㅋ 취ㄴ 어ᄌ	가맹본부	계열회사
주 메뉴가 커피, 초콜릿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올리버브라운 카페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반경 500m당 1개 점포	계약서 내에 영업지역 표시 및 별지에 지도로 표시	
비고	다만, 지역에 따라 개설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고 특수상권(백화점,	
N 2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상권으로 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영업지역 조정절차

당사가 영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해 ① 귀하에게 영업지역 조정안 통지서를 보내면 ② 귀하는 당사와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이 방문한 경우 그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On-line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할**수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 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약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52.29	47.7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1년</u>간 만료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거절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갱신 거절사유

계약갱신 거절사유

- ① 귀하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④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⑤ 귀하가 당사의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⑥ 귀하가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나) 계약 종료 사유

계약 종료 사유

- ①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②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③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④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⑤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1) 당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

- ① 귀하가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
- ② 귀하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③ 귀하가 통일성과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④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하거나 획득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⑤ 귀하가 변경 전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간판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영업표지와 관련된 간판 등으로 변경・시공・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⑥ 귀하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⑦ 귀하가 광고·판촉활동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귀하가 타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 ⑨ 상품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해당됨)
- ⑩ 귀하가 상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질된 상품을 폐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

- ①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동의 등을 묻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당사가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기타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에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해지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 ①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귀하가 『가맹사업법』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는 『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2) 귀하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 ①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②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 ③ 당사가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④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⑤ 당사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외하고 양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수정·변경될 경우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당사의 승인이 존재	귀하가 당사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예비 양수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귀하에게 양도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훈련 이수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 당사는 귀하의 법적 상속인의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가능 조건	상속 절차	비고
법적 상속인인 경우 가능	상속인이 당사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상속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상속인에게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상속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훈련 이수

나)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임대 또는 대리경영(예. 귀하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올리버브라운 카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3:00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함	문의 : 가맹사업부(02-330-4298)

『가맹사업법』제15조제10호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점포당 매니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을 점포관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야 하며 점포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인원은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항목	시 기	위반 시 책임
표준레시피 준수, 위생점검, 고객서비스 점검, 품질기준·상품 관리·재고관리 점검, 매출관리, 각종 설비·장비점검 등	년 2회	상품공급 중단/계약해지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올리버브라운 카페"**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	성격	부담 비율		
Т :	<u> </u>	84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브랜드ㆍ상품 광고	전체 광고비의 30% 부담	(해당)가맹점사업자들이 나머지	
			[전세 8포미크 30/0 구급	70% 안분	
	광 고	브랜드•상품 및	전체 광고비의 35% 부담	(해당)가맹점사업자들이 나머지	
전국ㆍ지		기맹점 모집 광고	전세 경포미의 33% 구급	65% 안분	
역 단위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	
	판 촉	피ᄎᇵᄃ	저게 피ᄎ비이 200/ 버다	(해당)가맹점사업자들이 나머지	
		단 촉 판촉활동 전체 판촉비의 30% 부담		70% 안분	
	마일리	지카드	-	고객 구매가격의 5%	
할인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월 할인금액 전액 부담	
분담 절차 사전 약정 :		사전 약정	체결 또는 사전 동의(광고 50%, 판촉 70% 이상) 절차 진행		
ш.	,	○ 지역단위 광고·편	· 소활동의 경우 기간 또는 비용부	담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비고		○ 마일리지카드의 적림금은 구매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가격부문,** 신상품 관련부분, 상품공급거래처, 가맹점운영 노하우 등으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귀하를 포함한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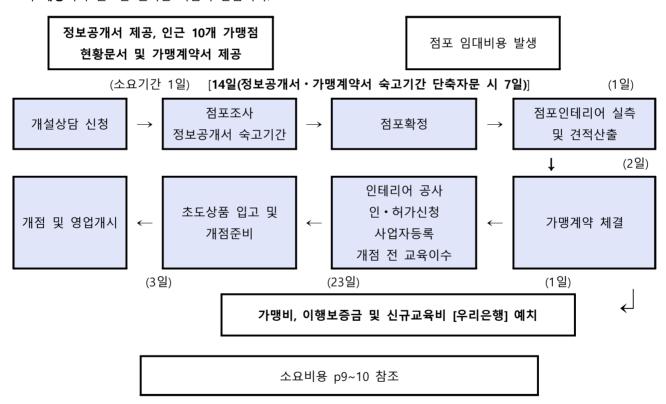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임원 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특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1) 당사와 귀하간의 분쟁의 경우

당사와 귀하가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와 귀하의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 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는『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 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하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당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등 비용지원 내역

1)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FLII	비용 항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성과 무관하게 귀하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경우	총 비용의 20%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하는 경우	총 비용의 40%		의 40%	
71.7	저비	귀하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 청구일부터 90일 내 지급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시급	절차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당사는 공/	나가 끝난 날부터	합의에 의해 분할 지급 가능	
		통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90일	이내 지급		
비	용부담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	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기 B 의사유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5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1 111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	고			-		

구	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실시하는 경우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			
당사	항목	긔칪긴 저성	I NI요 보다	
부담	비용	귀하가 전체 비용 부담		
	비율			
지급	절차	체결된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비용부담			
제오	기사유		-	
비	고		-	

2) 영업표지 변경의 경우

당사가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영업표지 변경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영업표지의 변경				
당사	비용 항목	간판, 로고 등 영업표지 교체 비용				
부담	비용 비율	총 공사비용의 20%				
 ₁₁ 2	절차	귀하가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합	걸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합의에 의해 분할 지급 가능		
	용부담 기사유	영업표지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	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을 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경영활동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에게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체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고
당 사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 방문		비정기적으로
0 1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 경영진단 → 귀하에게	귀하가 부담	시행할 수 있음
귀 하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지도 → 귀하 이행		귀하의 요청 시 시행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에게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정책	경영 컨설팅 지원	
주요 내용	내용 매출 부진 가맹점 판매 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지원 조건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에 미달한 가맹점	
지원 기간	상 시	
지원 내용 경영 컨설팅		
비고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올리버브라운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 방식	기 한	비고
신규교육	1. 브랜드 소개 2. 위생교육 3. 음료 레시피 교육, 커피실무 교육 4. 메뉴교육 및 베이커리 교육 5. C/S 교육	이론교육	5일	필수교육
	1. 장비교육 2. 커피 및 음료 실무 3. 고객대응 실무 4. 바리스타 직무교육	현장교육	5일	
재교육	1. 고객응대 교육 2. 바리스타 직무교육 등		** 77	ELA 7.0
보수교육	1. 신상품 교육 2. 기존상품 향상교육 등	이론 및 현장교육	추후 공지	필수교육
기타 교육	해당 가맹점에 필요한 교육	추후 협	<u> 0 </u>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올리버브라운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최소 시간	비 용	비고
신규교육	10일	2,200	최초계약 시 이수/귀하와 매니저 기준
재교육	수후 공지	1인당 550	-
보수교육			-
기타 교육	추후 협의		귀하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3. 교육・훈련의 주체

당사의 교육・훈련은 귀하와 귀하의 가맹점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공급 중단사유·가맹계약해지 사유·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월,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2년 5개월	2023. 12. 31.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부: 02-330-4298

○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044-200-4010

가맹거래과: help@ftc.go.kr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워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